

## '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 안내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금(정규직 채용\* 후 최초 6개월 이상 근속분)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, 고용 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년을 근속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차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를 신청할 수 있음  
\* 기간제 등으로 채용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
- (지원요건)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 신청 시,  
<기업요건>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 
<청년요건>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으로 ①1회차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②2년 근속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요건이 유지되었다면,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 신청 가능
- (지원금액) 24개월 근속시 480만원
- (지원금 신청 기간)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 
- (제출 서류)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등(서식1~2), 근속 2년에 대한 증빙자료(재직증명서 등)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- (부정청구로 인한 참여제한 기업)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처분일로부터 도약장려금의 협약이 해지되므로,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 신청 불가함
- (신청방법) 고용24([www,work24.go.kr](http://www.work24.go.kr))를 통해 신청 및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 신청서,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

■ [장기고용인센티브 서식 1]

## 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』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○○기관 - 20 - 0000	접수일자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

사업장명		대표자명	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( )	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	
소재지			
담당자	성명	전화번호	
	이메일	팩스번호	

신청내용				
성명 (주민/외국인등록번호)	채용일* (년 월 일)	/	신청기간 (년 월 일 ~ 년 월 일)	신청금액 (원)

\*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

장려금 총 신청인원 ( ) 명 , 신청금액 ( ) 원

기업명의 계좌번호	( ) 은행	(예금주 : )
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

고용조정 제한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 발생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\* 고용조정 제한기간 내에 이직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.

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』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### 고양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2년차 근속 증빙자료(재직증명서 등 2년 근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) 2. 사업주 확인서(지원금 신청서)
------	---

※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.

※ 접수	접수 연월일			접수번호		처리부서	
※ 선람	담당		팀장		과장	결재 연월일	

## 사 업 주 확 인 서 (지원금 신청 시)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###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

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(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)	
① 소비·향락업	[ ] 예 [ ] 아니오
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·지방공단, 학교	[ ] 예 [ ] 아니오
③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	[ ] 예 [ ] 아니오
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	[ ] 예 [ ] 아니오
⑤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	[ ] 예 [ ] 아니오
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*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	[ ] 예 [ ] 아니오
⑦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(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)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	[ ] 예 [ ] 아니오
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	[ ] 예 [ ] 아니오

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(지원금신청시 기준) (*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)	
① 1회차 이상 지원금이 지급된 자	[ ] 예 [ ] 아니오
② 2년간 근속이 유지된 자	[ ] 예 [ ] 아니오
③ 기타 사업운영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	[ ] 예 [ ] 아니오

기타	
①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신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	[ ] 확인
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	[ ] 확인

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·추가징수·지급제한·형사처벌·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[ ] 예 [ ] 아니오

년 월 일

확인자  
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고양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